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법제적 검토

신정규 (Jung-Gyu Shin)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접수 : 2021. 07. 27.

심사개시 : 2021. 08. 02.

게재확정 : 2021. 08. 25.

목 차

- I. 들어가는 글
- II.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제적 쟁점과 검토 대상 법령 범위
 - 1. 법제적 쟁점
 - 2. 검토 대상 법령 범위
- III. 「영유아보육법」적 관점
 - 1. 「영유아보육법」상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율체계
 - 2.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범위 및 개념
 - 3. CCTV의 설치·관리자의 개념과 범위
 - 4. CCTV 열람권자의 범위
 - 5.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 “안전을 확인할 목적”의 의미
 - 6. CCTV 설치가능 구역 내지 공간의 확대 또는 추가설치 허용여부
 - 7.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대상 사항의 확대
 - 8. 영상정보 보관기간 60일에 대한 해석
- IV. 「개인정보 보호법」적 관점
 - 1. 영상정보의 열람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 영역의 구분
 - 2. CCTV 영상정보 촬영 및 외부유출에 따른 제재 내지 처벌가능 여부
 - 3. CCTV 열람요청을 위해 열람요청자의 자녀 이외의 다른 영유아의 동의 필요 여부
- V. 「아동복지법」적 관점
 - 1. 「아동복지법」 제66조의 조사의 범위
 - 2. 「아동복지법」 상 관계공무원의 범위
- VI.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적 관점
- VII. 결론

국문초록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법제적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은 CCTV 등에 의해 생성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자의 열람요청의 목적으로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 확인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은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단순한 주관적인 의심이 존재할 경우에도 보호자의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고 이는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을 개정하여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열람 요청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의사소견서의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법령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CCTV의 설치·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자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른 CCTV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리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44조를 개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대상으로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주제어: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 열람요청, CCTV

I. 들어가는 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¹⁾로부터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해 규율되는 시설인 ‘어린이집’에 내부에 설치된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설치 및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같은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인 ‘CCTV’이다.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 ‘CCTV’ 대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현행 가이드라인²⁾은 실질적인 규율 내용의 대부분이 CCTV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2015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더불어 도입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하 ‘CCTV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를 시도하는데 본 글의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CCTV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법제적 개선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제적 쟁점과 검토 대상 법령 범위

1. 법제적 쟁점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제적 쟁점은 크게 ‘CCTV의 열람 및 설치와 관련된 사항’과 ‘CCTV의 열람 제한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문제되는 법제적 쟁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Dr.iur. LL.M Göttingen), shinjg@cbnu.ac.kr (010-5154-4249)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상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 친권이나 후견권을 가지는 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보호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된다.

2) 이 글에서 참고의 대상이 된 가이드라인은 2021년도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다.

가. CCTV 열람 및 설치

- CCTV 가이드라인상의 “CCTV 설치·운영자/설치·관리자” 개념
- 어린이집 설치자와 운영자를 역할과 의무 측면에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CCTV 설치가능 구역 내지 공간의 확대 또는 추가설치 허용여부
- 아동복지법상 관계공무원의 범위
- 어린이집 원장의 CCTV 열람권한의 범위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안전을 확인할 목적”의 의미
- CCTV 열람주체의 범위
- 시정명령 대상 사항의 확대
 - 내부 관리계획 수립, 잠금장치 및 보육실 내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시정명령

나. CCTV 열람 제한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되는 CCTV 열람범위
- CCTV 영상정보 촬영 및 외부유출에 따른 제재 내지 처벌가능여부
- CCTV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요청자의 자녀 이외의 다른 영유아의 동의 필요 여부

2. 검토 대상 법령 범위

(1) 「영유아보육법」

CCTV 가이드라인은 「영유아보육법」상 설치된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CCTV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된 시설이나 기기 등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법은 원칙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이 된다. 따라서 CCTV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하는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영상정보의 열람 허용 범위, CCTV의 관리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기초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을 법률적 검토사항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의해 설치되는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설치·관리 목적은 영유아³⁾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이며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⁴⁾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물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된 법령들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조 제1항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명시적인 규정으로 인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되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의5조 제5항에 따라 CCTV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한 사항은 1차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상 규정들이 적용되고 규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항들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CCTV 등에 의해 생성된 영상정보의 열람제한과 CCTV 등의 설치·관리자의 열람권한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2020.2.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아동복지법」

CCTV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통해 생성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및 열람의 금지와 관련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서 규율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는 영상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사유(열람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2호와 제4호에서는 「아동복지법」상 규율내용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⁵⁾ 이와 같은 의미의 연관성은 CCTV에 의해 생성된 영상정보의 열람허용사유에 대한 해석과 연관되는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관련 조항을 검토하기로 한다.⁶⁾

3) 「영유아보육법」상의 ‘영유아’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되어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영유아에 해당한다.

4)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의 2. 용어의 정의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영유아보육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네트워크 카메라가 해당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칭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라 칭하기로 한다.

5)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의 제1항 제2호와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1호 참조.

6) 본 글에서는 2020.4.7. 법률 제17206호로 일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그 대상으로 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서부터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법적 성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해당될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에 생성된 영상에 대한 열람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보호자 등의 열람허용사유와 그 범위를 검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규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규정도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⁷⁾

III. 「영유아보육법」적 관점

1. 「영유아보육법」상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율체계

(1) 전체 규율체계

「영유아보육법」⁸⁾은 전체적으로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직무와 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장과 제3장의 규정에 규율되어 있다.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이다. 이들 조항 중 전자의 경우 주로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주로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생성되는 영상정보의 열람제한 및 금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영상정보에 대한 행위금지사유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제3장의 규율내용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나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규율사항이 아니나 제3장의 규율내용인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의 일반적인 의무와 권한, 자격,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은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 및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관한 ‘보육교직원’의 권한과 그 범위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7) 본 글에서는 2020.12.22. 법률 제17690호로 일부개정된 정보공개법을 그 대상으로 한다.

8) 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를 위해 [https://www.lawnb.com/ Info/ContentView?sid=L000000191](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191) 참조 (최근 검색일: 2021.05.06.).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전술한 바와 같은 규율체계를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우선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율조항 및 그 내용을 우선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영유아보육법」 제2장과 제3장 및 다른 관련 규정들을 참고하여 CCTV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와 관련된 쟁점 사항들을 다루기로 한다.

(2)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율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의 규율내용

(가) 제15조의4조의 규율 내용

1)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관리와 CCTV 미설치 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본문은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아동학대의 방지 등의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설치·운영 목적)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도록 하면서 그 설치·관리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단서는 CCTV를 대신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CCTV를 미설치할 수 있는 경우 규정하고 있다(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및 CCTV 미설치사유). 이는 「영유아보육법」상 설치 및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가 동일한 설치·운영 목적을 가지는 경우라도 1차적으로 CCTV를 설치·관리하도록 하되 한정적인 경우(예외적 내지는 보완적 허용)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CCTV 대신에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 CCTV의 미설치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제1호와 제2호). 우선 CCTV를 미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⁹⁾ 중인 영유아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보호자 전원의 동의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이다(CCTV 미설치사유). 그리고 CCTV를 대신하여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다(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사유). 다만 이 경우 CCTV를 대신하여 설치·관리되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9)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제2조 제2호).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CCTV 설치·관리자의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

CCTV 설치·관리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된다.¹⁰⁾ 이러한 의미의 CCTV 설치·관리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¹¹⁾ 등 정보주체¹²⁾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CCTV 설치·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주의 의무). 여기서 말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초상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와 제17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그 예로 들 수 있다.¹³⁾ 「헌법」상의 이러한 권리들은 사생활 영역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으로 볼 수 있으며 CCTV 설치·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주의 의무 내용 또한 사생활의 보호영역과 관련성을 가지는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과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상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관리자가 주의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 이외에도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의 정보주체에게 발생 가능한 민사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도 이러한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의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같은 법 제39조와 제39조의2는 정부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¹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¹⁵⁾ 한편 CCTV 설치·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주의의무는 비록 법문에 의무이행의 주체를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한

10)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11)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이라 함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제2조 제5호).

12) 「영유아보육법」상 ‘정보주체’의 의미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통해 확인된다.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13)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483, 판례집 30-2, 552, 561 [기각, 각하]-개인정보 제공 요청행위 위헌확인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이 외에 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헌마282;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마153 참조.

14) 「영유아보육법」상 개인정보처리주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로서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관리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이에 대해서는 관련 쟁점사항 검토나 개인정보 보호법적 관점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할 때 재논의하기로 한다.

정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단서는 CCTV를 대신하여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산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조항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관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 의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항은 전술한 내용 외에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동 조항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60일 이상의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이다. 특히 이 문제는 60일의 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제4장제24조의2의 구분에 따른 보육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60일의 기간이 지속적인(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성이 깊다. 이러한 기간의 법적 성격과 지속성(연속성)에 대한 법률상의 기준은 현행 관련 규정이 없으며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¹⁶⁾ 영상정보의 60일 보관기간의 법적 성격 및 지속성(연속성)에 대한 쟁점은 이하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4)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규율사항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4항은 CCTV의 설치·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과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¹⁷⁾ 제9조에서부터 제9조의3까지의 규정이다. 동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과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대한 사항이다.

16)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부터 제9조의3까지의 규정이다.

17) 본 연구에서의 동 규칙은 2020.12.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나) 제15조의5조의 규율 내용

가) 영상정보 원칙적 열람 금지 및 예외적 열람허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은 CCTV 설치·관리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의 영상정보(CCTV 등의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CCTV 등의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 설치·관리자가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CCTV 등의 영상정보’ 열람의 원칙적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예외적인 영상정보의 열람허용의 내용은 크게 ‘열람요청의 주체’와 ‘열람요청의 목적’으로 구분된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은 ‘영상정보의 열람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로 보호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범죄수사 및 법원의 재판관련 기관,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¹⁸⁾를 규정하고 있다. ‘열람요청의 목적’은 보호자가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 확인”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¹⁹⁾이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2조²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열람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밖에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린이집 공제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열람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 CCTV 설치·관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있어서의 금지행위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2항은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자로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금지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목적인 ‘아동학대의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

1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공제회로 규정하고 있다.

1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0) 「영유아보육법」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린이집의 보안'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와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²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 등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등에 관한 것이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및 점검 의무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등의 설치·관리 및 그 영상정보의 열람 실태를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을 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4항은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그 영상정보의 열람이 관련 법령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및 감독을 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4항에 의해 인정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및 점검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5)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5항은 CCTV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2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15조의5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영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항으로 인해 CCTV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제3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4장)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5장)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CCTV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해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사항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²²⁾

6) 관련 판례

2019년 울산지방법원 판결²³⁾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甲(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甲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동 판결을 통해 CCTV 영상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적극적으로 은닉한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8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2015. 9.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71호) 제2의 다 1)항(“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또는 3)항(“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함”)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다.

22)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제15조, 제22조, 제27조 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영유아보육법」상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7조 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는 「영유아보육법」상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23) 울산지법 2019.6.13., 선고 2018노1287 판결.

2.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범위 및 개념

(1)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범위

「영유아보육법」 제10조는 어린이집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어린이집의 종류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의 종류]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국공립어린이집(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제2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제3호):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제4호):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 가정어린이집(제5호):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제6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제7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이처럼 「영유아보육법」 제10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에 따라 어린이집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범위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되고 나머지 어린이집의 경우 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법인)·단체·조합(보호자 조합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으로 결성된 비영리 조합)·사업주(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개인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된다.

(2)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개념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범위를 같은 법 제10조를 기초로 이해를 한다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개념적 정의도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범위와 개념을 동일하게 파악을 한다면 CCTV 등의 설치·관리자의 범위 및 개념과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교직원의 지위이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²⁴⁾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의 보육교직원은 엄밀하게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포함되지 않고 단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의해 고용된 자로 보아야 한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개인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지위와 보육교직원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외에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있어서 설치자와 운영자를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설치자와 운영자를 상호분리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게 될 경우 영유아의 보육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의 설치자와 운영자를 분리하여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구분할 정책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어린이집 원장에 의해 실질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법률상 구분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의 설치자와 운영자를 구분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CCTV의 설치·관리자의 개념과 범위

(1) CCTV의 설치·관리자의 개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은 CCTV의 설치·관리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장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며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육교직원의 직무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 규정 내용을 보면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업무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의 업무로 명문화되어

24)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외의 그 밖의 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등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긴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도 ‘그 밖의 직원’에 포함될 수 있다.

있지 않다. 법문에 따를 경우 엄격한 형식적 해석을 하게 된다면 CCTV의 설치·관리자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지위를 가진 자에 한정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및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경우 설치·운영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상의 법인이거나 자연인이 아닌 단체적 성격을 가지는 사법인인 경우 이들 법인 자체가 직접적으로 CCTV를 설치·관리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을 배치해야 하고 배치된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에 의해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관리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CCTV 설치·관리자의 개념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CCTV 설치·관리자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2) CCTV의 설치·관리자의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형태(자연인 또는 법인·조합)를 고려한 CCTV 설치·관리자의 범위를 명확하고자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이 CCTV 설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이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에 규정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는 어린이집 운영의 총괄과 아울러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보조교사 및 대체교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다. 이러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인적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CCTV의 설치목적인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에 규정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²⁵⁾ 보육교사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어린이집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영유아를 보육한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직무체계에 따라 보육교사의 직무에도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설치·관리의 목적이 되는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 관련 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를 근거로 CCTV 설치·관리자는 법문에 규정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경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을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

25) 어린이집의 총괄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에는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한 일정한 시설의 설치와 관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영유아의 안전은 어린이집 원장이 가지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제논단

상 보육교직원도 CCTV의 설치·관리자가 될 수 있다.²⁶⁾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현행 CCTV 가이드라인에도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서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책임자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 등을 지정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본문의 CCTV 설치·관리를 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 현행 CCTV 가이드라인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CCTV 설치·관리 주체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CCTV 설치 및 관리책임자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2)
국공립어린이집	국가·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 (사회복지법인 제외)		○	
직장어린이집	사업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	
가정어린이집	개인	○1)	○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에게 의해 결성된 비영리조합		○	
민간어린이집	개인 또는 법인	○	○	

주1.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나 조합이 아닌 개인(자연인)인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동일인이라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곧 CCTV 설치·관리자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육교직원으로서 별도로 어린이집 원장을 둘 경우 그 원장을 CCTV 설치·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주2. 보육교사는 운영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CCTV 설치·관리업무 담당 보육교직원에 대한 책임

CCTV의 설치·관리자의 범위를 전술한 바와 같이 이해한다고 할 경우 문제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 규정된 CCTV 등의 설치·관리에 따른 법령상의 직

26) 이와 같은 점은 이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별표 1의2의 내용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 기준」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며, 다만 지정된 직원(관리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일상적인 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 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은 장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를 소홀히 하여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경우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책임관계이다. 이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책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조합이나 법인과 같이 법인격을 가진 단체의 형태를 가질 경우 보육교직원을 CCTV 설치 및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책임자가 되고 보육교사는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또는 운영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는 같은 법 제15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리고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책임은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자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CCTV 설치·관리자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경우이며 동일인 아닐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5조의 양벌규정²⁷⁾에 의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2항제1호와 제2호 및 제15조의3제3항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2)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에 대한 책임

보육교사가 CCTV의 운영담당자로 지정된 경우라도 어린이집 원장은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의 지위를 가지는 보육교사를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열람요청의 접수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영상정보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므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지

27) 「영유아보육법」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를 가지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5조의 양벌규정에 의해 「영유아보육법」 제54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CCTV 열람권자의 범위

(1)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된 경우 ‘보호자’의 실시간 영상정보 열람권

CCTV를 설치하는 대신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친권자 등의 「영유아보육법」상 보호자가 영상정보에 대한 실시간 접근권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상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관련 규정들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들 장치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2020.8.4. 대통령령 제308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동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할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 경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카메라의 설치·관리자가 되고 관리권한을 가지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비록 CCTV를 대신하여 네트워크 카메라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상 ‘보호자’의 실시간 영상정보 접근권(실시간 영상시청)은 목적과 열람시기 등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 「영유아보육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생성된 영상정보에 대한 ‘보육교직원’ 열람권

1) ‘보육교사’의 열람요청권 인정여부

「영유아보육법」상 CCTV에 의해 생성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요청은 원칙적인 금지로 규정하고 있고 한정적인 허용사유를 4가지로 법정화하고 있다. 4가지의 열람요청허용사유에 있어서 열람요청의 주체로 「영유아보육법」상 규정된 자는 보호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²⁸⁾,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이에 반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가지는 ‘보육교사’를 영상정보의 열람요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유아보육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통해 생성된 영상정보에 대한 보육교사의 열람요청권의 허용여부는 우선 「영유아보육법」상 규율취지나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요청의 주체 및 요청목적은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5항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보육교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중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인해 생성되는 영상정보의 열람요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비록 「영유아보육법」상 CCTV로 생성되는 영상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²⁹⁾ 보육교사의 그러한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요청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5항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열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의 요청 등이 없는 한 직접적인 열람요청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열

28) 주. 19) 참조.

2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가지는 보육교사는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생성되는 영상정보의 정보주체로 볼 수 있고 그 영상정보 또한 보육교사를 식별할 수 있는 영상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육교사는 자신이 녹화된 영상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요청을 할 수 있다.

람요청권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5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개정을 통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열람목적이나 필요성의 범위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5항에서 제시된 것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일반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권한의 인정 여부

아동학대의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 및 관리책임자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권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CCTV 등의 설치·관리책임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2항에 의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므로³⁰⁾ 어린이집 원장이 가지는 실시간 모니터링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봐야 하고 구체적인 제한의 범위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권한은 CCTV 설치·관리자로서 가지는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CCTV 가이드라인에서도 어린이집 원장과 같은 CCTV 설치·관리책임자 이외에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이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 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기타 설치·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일반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의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2항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가이드라인의 개정 시 어린이집 원장과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의 이와 같은 「영유아보육법」상 준수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2항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의무를 위배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제2조제5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CCTV 설치·관리자(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도 CCTV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야 한다.³¹⁾

30)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참조.

31) 최근 직장 내 감시카메라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에 관한 판결이 있었다. 동 사건은 스페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스페인의 한 슈퍼마켓 점원들이었던 5명의 청구인들이 고용주가 설치한 CCTV를 통해 절도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된 후, 숨겨진 CCTV에 의한 감시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8조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으로 수집된 증거의 사용은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유럽인권재판소

5.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안전을 확인할 목적”의 의미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은 CCTV 등에 의해 생성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자의 열람요청의 목적으로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 확인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은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 등에 의해 생성된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요청이 가능한 경우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로서 CCTV 설치·관리자(책임자)에게 영상정보열람 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때를 말한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시행규칙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보호자의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요청을 상당히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칫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을 개정하여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로 하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열람요청서와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CCTV 설치가능 구역 내지 공간의 확대 또는 추가설치 허용여부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그 설치의 목적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의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이라는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맞게 CCTV의 설치가

에 제소된 사건이다. 이에 2018년 1월 9일 유럽인권재판소 소재판부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위반만을 인정하고 제6조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항소하여 유럽인권협약 제43조에 근거하여 대재판부의 회보를 요청하였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대재판부로 회부되었다. 2019년 10월 17일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는 소재판부의 판결을 일부 뒤집어 유럽인권협약 제8조 및 제6조의 위반이 모두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는 조경선 외(2020) 2면 이하 참조.

능 구역 내지 공간의 확대 또는 추가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CCTV 가이드라인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주/부 출입문), 어린이집 내부의 계단과 계단 사이의 연결 공간 및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보안을 위해 필요한 중요지역 및 공간(시설)에도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한 명백한 필요성이 없는 한 CCTV의 설치에 허용될 수 없다.

7.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대상 사항의 확대

(1) 「영유아보육법」상 시정 및 변경 명령의 대상

1)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44조는 제1호에서부터 제8호의 규정을 통해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³²⁾ 이러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의 대상 중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관리와 관련되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른 CCTV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행위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의 대상이 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CCTV의 설치·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자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른 CCTV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CCTV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의 불이행 또는 관련 법령과 저촉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의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0.12.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제5호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로 개정되었다.

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3항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의2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규율을 위한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15조의4와 제15조의5 중 전자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만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는 같은 법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구분 되는 것으로 내부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는 보호자 등의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장의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청구 및 영상정보의 분실·도난 등의 외부적 관계에서 문제되는 법령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구분된다.

(2) 「영유아보육법」상 시정 및 변경 명령과 벌칙 적용 대상의 구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와 제15조의5가 가지는 규율대상에 있어서의 차별성으로 인해 전자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정보주체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율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제54조는 이를 같은 법 제15조의5제2항제1호와 제2호 및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벌칙조항을 두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시정 및 변경 명령과 벌칙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이와 같은 입법태도를 고려할 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 위반되는 행위를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벌칙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정명령 대상 사항의 확대가 문제되는 경우

1)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

내부 관리계획은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를 위한 내부적인 계획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의 대상은 이미 밝힌 바와 같

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른 CCTV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와 제15조의5에 부합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불이행 및 내부 관리계획의 내용 변경이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의 대상으로 추가될 필요성 존재한다. 다만 이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과 같은 작위 의무를 요구하는 부담적 공권력 작용인 이상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³³⁾

2) CCTV 등의 영상정보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및 보육실내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CCTV 등의 영상정보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및 보육실내 사각지대 발생과 관련한 시정 또는 변경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에 포섭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CCTV 등의 영상정보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및 보육실내 사각지대 발생의 방지를 위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의2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8. 영상정보 보관기간 60일에 대한 해석

(1) 「영유아보육법」상 영상정보 보관기관에 대한 규정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단지 60일 이상의 CCTV에 기록된 영상물의 보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60일의 기간이 중단 없는 지속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의한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시간을 의미하는 ‘운영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4

33) 헌법재판소 2014. 9. 25. 2012헌마1029, 판례집 26-2상, 578, 585 [기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7호 위반 확인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여기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소 2018. 4. 26. 2015헌가13, 판례집 30-1상, 516 [합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정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인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로 이해되고 있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항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은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대한 규정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60일의 CCTV 영상 정보 보관기간의 지속(연속)여부와 운영일(또는 보육기간)에 한정되는지 여부는 우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및 제3항을 기초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은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CCTV에 기록된 60일 이상의 영상정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8제1항제3호의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내부 관리계획에 따른 CCTV 등의 영상정보의 삭제주기는 영상정보보관기간의 해석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3항은 같은 규칙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CCTV 등의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고시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³⁴⁾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규정된 내부 관리계획에 따른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는 60일의 영상정보보관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³⁵⁾ 그리고 동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부 관리계획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의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영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규칙적인 시간적 간격(주기)을 말하는 것이지 60일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전후로 60일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와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사

34) 2015.9.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71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35) CCTV가이드라인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관리에 따르면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책임자 및 담당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과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의 지속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보육기간 또는 운영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며 60일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의 의미에 대한 사항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규정의 태도를 볼 때 이들 규정으로부터 60일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상 지침을 도출해낼 수 없다.

(3) 60일의 영상정보보관기간에 대한 사항이 법률상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

60일의 CCTV 등 영상정보보관기간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법률유보사항이라면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CCTV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컨대 이미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3항 등의 관련규정에서는 법률유보사항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관련 법령의 이와 같은 내용 외에도 영상정보보관기간의 일수는 CCTV 등의 영상정보기기의 설치·관리자에게 영상정보 보관의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60일의 기간 자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이상 기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입법을 통해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60일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

(4) 소결

관련 법령상의 규정으로부터 60일의 영상정보보관기간에 대한 해석적 지침을 도출할 수 없다는 점과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항에 규정된 60일간의 영상정보보관기간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쟁점은 「영유아보육법」상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CCTV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은 고려한다면 60일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영유아보육법」상 규정된 특정된 기간에 한정해서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상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인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은 특정된 기간에 한정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 어렵고 발생과정

나 빈도를 특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이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집 운영일이나 운영기간에 한정된 의미로 영상정보보관기간을 해석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60일의 CCTV 등의 영상정보보관기간의 기산점은 어린이집의 운영기간을 의미하는 보육기간의 개시일이 아닌 임의의 촬영일로부터 60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60일의 기간도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영상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속된 60일의 기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규정된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현행 CCTV 가이드라인 ‘7.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에 따르면 CCTV 녹화시간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필요에 따라 야간 휴일 등에도 녹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통일적이고 명확한 기준설정을 위해 60일 이상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의 의미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IV. 「개인정보 보호법」적 관점

1. 영상정보의 열람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 영역의 구분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와 이를 통해 생성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상정보의 열람의 허용사유나 거부사유를 파악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5항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영유아보육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상정보의 열람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 영역은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상 열람요청과 허용·거부사유는 CCTV 설치·관리자(책임자)와 정보주체(영

유아 및 보육교직원)가 아닌 제3자(영유아의 보호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 등) 사이에 적용되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요청과 허용·거부사유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호의 ‘정보주체’사이에 적용된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CCTV 설치·관리자 또는 보육교직원인 CCTV 설치·관리책임자와 정보주체인 영유아와 보육교사 사이에 발생하는 CCTV 등의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요청 및 이에 대한 허용·거부에 대한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이들 내부 간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2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CCTV 등의 영상정보의 내용이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정보로 구분이 가능하고 또한 다른 영유아의 영상정보가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 다른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영상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면 단순히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와의 관계가 아니므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가 적용되게 된다.

2. CCTV 영상정보 촬영 및 외부유출에 따른 제재 내지 처벌가능 여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한 영상정보를 CCTV 설치·관리자 몰래 제3자가 촬영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 내지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선 「영유아보육법」 제54조의 벌칙조항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같은 법 제54조제3항은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자(CCTV 설치·관리자 또는 책임자)가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도록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가 CCTV 등에서 생성된 영상정보를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될 수 없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영유아보육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동 법의 적용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주체 간의 개인정보 보호관계로 제3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제1호와 제2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와 달리 정보주체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제3자가 행한 개인정보의 변경·말소 및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후 제3자 제공과 제공의 교사·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자 등의 제3자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생성된 영상정보를 촬영하고 유출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제1호와 제2호의 적용을 받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3. CCTV 열람요청을 위해 열람요청자의 자녀 이외의 다른 영유아의 동의 필요 여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적용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와 제15조의5는 개인정보처리자인 CCTV 설치·관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인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³⁶⁾ 따라서 보호자 등의 CCTV 등에 저장된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영상정보에 정보주체인 다른 영유아의 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인 다른 영유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가 개인정보처리자인 CCTV 설치·관리자나 보호자 등이 질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손해배상 및 벌칙에 따른 책임의 면책조건이 되지 않는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가 적용될 경우 CCTV 등의 설치·관

36) 여기서 구분을 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행위(제3자에 대한 제공은 포함되지 않음)가 허용되는 사유(개인정보의 사용 및 이용허용사유)를 규정한 반면에 같은 법 제17조는 제15조에 의해 허용된 수집 및 이용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공유를 포함)하는 행위에 대한 허용사유(개인정보 제3자 제공 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율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리자(책임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영유아의 안전 및 어린이집의 보안) 범위에서 CCTV 등의 영상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상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해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이며³⁷⁾ 이러한 의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의해 설치·관리되는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와 이를 통해 생성되는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만이 적용되므로 다른 영유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5항에 적용을 제외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의 설치·관리와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³⁸⁾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상 CCTV 등의 영상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상 CCTV 등의 영상정보가 처음부터 정보주체(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는 「영유아보육법」상 CCTV 등의 영상정보의 열람요청에 따른 영상정보의 제공(열람)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로 볼 수 없다.³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5조 및 동의 방식

「영유아보육법」상 CCTV 등의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2항에 의해 같은

37) 따라서 이러한 범위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므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5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38)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5항의 문리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왜냐하면 법문의 전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 가능한 영역을 CCTV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의 우선적 적용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정보주체로부터의 정보제공의 수집에 대한 동의라든지 제3자에게 행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행위의 동의요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39) 그리고 동의대상도 좀 더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CCTV 등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를 취득하기 전에 개인 정보처리자인 CCTV 설치·관리자(책임자)가 정보주체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영상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와 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제공행위에 대한 동의로 구분해야 한다.

법 제22조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제22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방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다. 같은 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별적 동의 원칙). 그리고 제6항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영상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이 「영유아보육법」상 CCTV 등의 영상정보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영상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의 방식에 대해서는 개별적 동의방식만을 취할 필요가 없으며 동의권자를 법정대리인에 반드시 한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V. 「아동복지법」적 관점

1. 「아동복지법」 제66조의 조사의 범위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의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한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의 범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와 제66조를 기초로 그 조사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한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는 이와 같은 금지행위로부터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기 위해 CCTV 설치·관리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법」 상 관계공무원의 범위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의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한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우선 「아동복지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같은 법 제13조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담공무원 이외의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의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한 영유아의 안전업무는 아동의 복지 및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VI.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적 관점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종류는 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들 어린이집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라목에 속하는 공공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에 규정된 어린이집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CCTV 등의 영상정보 열람요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르도록 한 바 비록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와 제15조의5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법의 규정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 적용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CCTV 가이드라인 6. 열람 및 제공에 관한에서는 이와 달리 서술하고 있는바 개정을 요한다.⁴⁰⁾

VII. 결론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은 CCTV 등에 의해 생성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자의 열람요청의 목적으로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 확인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은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40) 이를 위해 CCTV가이드라인 6. 열람 및 제공 190면 참조.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단순한 주관적인 의심이 존재할 경우에도 보호자의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고 이는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을 개정하여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열람 요청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의사소견서의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법령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CCTV의 설치·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자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른 CCTV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리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44조를 개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대상으로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참고문헌〉

[논문]

조경선, 임기영, 임윤정 (202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시계헌법재판 조사연구 5호. 서울: 헌법재판연구소 헌법재판연구원.

조재현 (2015). 아동학대의 예방적 과제로서 아동보육시설에서의 영상감시카메라 의무적 설치의 헌법적 문제: 미국의 영상감시카메라의 운영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6(2), 261-300.

차선자 (2016).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관련법 검토. 법합논총, 36(3), 545-575.

[보고서]

보건복지부 (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0). 2020년도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2021). 2021 보육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헌법재판소 및 법원 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5. 2012헌마1029, 판례집 26-2상, 578, 585 [가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7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7. 2. 27. 선고 2015헌마994 판결

헌법재판소 2018. 4. 26. 2015헌가13, 판례집 30-1상, 516 [합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

울산지법 2019.6.13., 선고 2018노1287 판결.

[인터넷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main.html>

헌법재판소 결정 http://search.ccourt.go.kr/thr/pr/thr_pr0101_L1.do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srch/sjo022.do>

울산지방법원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8905>

Abstract

legislational review for revision of the 「Guideline for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at Daycare Centers」

Jung-Gyu Shin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Based on the content reviewed so far, revisions to laws and guidelin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in daycare center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rticle 15-5, Paragraph 1 of the 「Infant Child Care Act」 provides for confirmation of the “safety of children or guardians” for the purpose of requesting a guardian to view video information generated by CCTV, etc. In addition, Article 9-4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states that “a guardian is suspected of having suffered mental or physical damage due to child abuse or safety accid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5, Paragraph 1, Paragraph 1 of the Act. In the case of such cases, a person who installs and manages a closed circuit television may submit a request for viewing video information or a doctor's opinion to request access to video information.” These regulations have the potential to be interpreted as being able to request access to video information of a guardian even if there is a simple subjective suspicion of mental or physical damage caused by child abuse or safety accidents. There is a potential for overly restricting your activities. Therefore, Article 9-4,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Infant Child Care Act was amended to change matters related to the 'safety of children or protected children' in the case of suspected mental or physical damage due to 'child abuse, safety accidents, etc.' It is reasonable to amend it to'. In addition, in the revised guideline, it is necessary to include in the law the matters required to submit a statement of opinion on mental or physical damage upon request for access. On the other hand, the violation of Article 44-2-2 of the 「Infant Child Care Act」 means a direct violation of the matters set forth in Article 15-4 of the 「Infant Child Care Act」 and related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the contrary, the act of not implement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l management plan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CCTVs, or establishing an internal management plan that does not meet the standards for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CCTVs and storage of image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15-4 of the Infant Child Care Act. Is not included in the violations stipulated in subparagraph 2-2 of Article 44 of the 「Infant Child Care Ac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mend Article 44 of the 「Infant Child Care Act」 in order to issue a correction or change order, and add it as the subject of the correction or change order.

Key Words: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personal information, infant care law, child abuse, reading request, CCTV